

차세대 방송미디어기술 연구센터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차세대 방송미디어기술 연구센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 차세대 방송미디어기술 연구센터(Advanced Broadcasting Media Technology Research Center, 약칭 ABRC)」(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센터는 차세대 방송미디어 분야의 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관련 산업계에 필요한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산업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산학관 협력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차세대 방송미디어 융합 시스템 기술개발 및 산업화
2. 관련 산업체의 기술고도화 지원
3. 기업,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산학관 협동 지원체계 구축
4. 지역 방송영상산업 활성화 지원
5. 기술이전, 기업보유기술의 상품화 및 마케팅 지원
6. 기업의 신상품 개발 및 창업 지원
7. 산학협동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인력양성
8. 기업 인력에 대한 재교육
9. 산학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
10.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소재) 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5조 (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6조 (운영부장) ① 운영부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부장은 센터장의 지시에 의해 센터 운영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다.

③ 운영부장의 임기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 (연구원 등) ① 센터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기관 소속의 관련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전임연구원으로 박사후과정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용 및 임기 등에 관해서는 본교 박사후과정에대한규정을 따른다.
- ③ 연구보조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기관 소속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하부조직) 센터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1. 행정지원실 : 센터의 제반 행정 업무와 예·결산 및 회계 관리, 연구 및 사업부문의 제반 대외내 활동 지원, 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 각종 연구지원업무를 담당
2. 연구기획실 : 연구 및 센터사업의 종합기획과 수립, 연구분야 조정, 각종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검토, 센터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3. 산학협력실 : 참여기업의 관리 및 기술이전, 산업체 인력의 기술교육, 기업홍보, 산학협동 과제를 추진
4. 장비관리실 : 센터의 공통장비 및 연구장비를 구매하고 관리

제 3 장 위 원 회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센터의 기본계획 수립, 예·결산, 연구·사업계획,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센터 참여교수와 참여기업 대표 등을 포함한다.
- ③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 ④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본교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 간사는 운영부장으로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평가위원회) ① 센터는 센터 주요 연구·사업의 평가분석과 센터 운영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에 참여하지 않는 타 대학의 해당 전공 교수 및 본교의 타 학과 교수, 유관기관 인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 ③ 평가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 ④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 ① 센터는 연구과제의 합리적인 선정과 사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과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관련 기관장

과 산업체 대표 및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단, 경기도 관계 공무원 및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센터 연구참여자는 제외한다.

- ③ 연구과제심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연구과제심의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간사는 운영부장으로 한다.
- ⑥ 연구과제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장비도입심의위원회) ① 센터는 장비도입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도입심의 위원회를 둔다.

- ②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관련 산·학·관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 ③ 장비도입심의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 ④ 장비도입심의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간사는 운영부장으로 한다.
- ⑥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자문위원회) 센터는 센터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재정 및 운영

제14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경기도 지원금,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본교 지원금, 센터 참여기업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출납) 출납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 명시된 재정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회계년도) 센터의 회계년도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예산 및 결산)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8조 (재산의 귀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센터가 해산될 경우, 그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19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